

2022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2. 11. 30(수) 11:00
2. 장 소 : 법인 회의실
3. 참석임원: 이사 총 10명중 8명 참석
대표이사 장영순, 상임이사 노희원, 이사 이상주, 이사 이충호,
이사 흥인식, 이사 신진상, 이사 고윤순, 이사 전광현.
4. 심의안건: 제1호 의안 2022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호 의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3호 의안 예규규칙 인천예림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인천예림
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5. 회의내용
 - 1) 성원보고
 - 정승윤간사 : 재적이사 10명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2) 개회선언
 - 장영순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 3) 전차회의록 접수승인
 - 장영순의장 :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은 결과 동의, 재청이 있었으며 전원 찬성하므로 원안대로 접수 · 승인하기로 선포하다.
 - 4) 심의안건
 - 장영순의장 : 심의안건 제1호 의안 2022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다.
 - 장영순의장 : 각 기관별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고은환실장 : 인천예림학교에서는 당초 5,731,976천원에서 487,714천원이 증액된 6,219,690천원으로 증액내용은 스프링클러 소방공사 및 재정결함운영보조금과 목적사업비 확정임을 설명하다.

○ 김덕준원장 : 행인행에서는 당초 5,638,915천원에서 41천원이 감액된 5,638,874천원으로 일부예산 소액조정에 따른 세목조정임을 설명하다.

○ 도경옥원장 :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당초 454,252천원에서 80,898천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373,354천원으로 감액내용은 인건비 보조금 확정임을 설명하다.

○ 정득기국장 : 예림원에서는 당초 4,384,665천원에서 예산액 변경없이 세입·세출조정임을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본 안건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 집행잔액의 조정임을 설명하다.

○ 홍인식이사 : 제출된 원안에 동의하다.

○ 이충호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장영순의장 : 제2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다

○ 장영순의장 : 각 기관별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정승윤간사 : 손과손 법인 예산안 총액은 1,285,741천원으로 전년대비 3,81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월금 증가 가예상액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하다.

○ 공보연원장 : 예림일터 예산안 총액은 736,195천원으로 전년대비 13,471천원 증액된 것이며, 사업수익금에서 업무추진비 2,300천원, 관리운영비 87,201천원, 시설비 4,500천원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이해정원장 : 행인행부평 예산안 총액은 2,312,137천원으로 전년대비 13,544천원 감액된 것으로 사업수익금에서 인건비 124,850천원, 관리운영비 123,750천원, 시설비 96,400천원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김덕준원장 : 행인행 예산안 총액은 4,926,233천원으로 이월금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712,641천원 감액된 것이며, 사업수익금에서 인건비 833,538천원, 관리운영비 304,551천원, 재산조성비 139,100원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도경옥원장 : 공동생활가정 예산안 총액은 439,673천원으로 전년대비 66,31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정득기국장 : 예림원 예산안 총액은 3,827,639천원으로 전년대비 490,671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운영비 보조금이 22년 대비 85% 편성됨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2023년도 예산안은 보조금 확정 전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작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이상주이사 : 보조금 확정전 예산이기에 원안에 동의하다.

○ 신진상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2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장영순의장 : 제3호 의안 예규규칙 인천예림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인천예림학교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다.

○ 장영순의장 : 본 법인은 2011년 12월 23일 이사회의를 통해 손과손 제규정 전면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법인의 발전에 따른 운영체계의 확보, 철학과 비전의 공유, 발전모델 개발, 강력한 실천력과 규범성 향상을 이루었다. 예규규칙 개정안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개정된 법과 지침 등에 맞춰 인천예림학교의 규칙을 재정비하고자 함을 설명하며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노희원교장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이 2021년 09월 24일로 일부 개정에 따른 인천예림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천예림학교 학교규칙에 대한 전면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의한 개정임을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보신 줄 압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흥인식이사 :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규칙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인천예림학교와 대표이사가 충분히 숙고하신 결과라 생각하며 원안에 동의하다.

○ 고윤순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3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6. 폐회

○ 장영순의장 : 폐회 동의와 재청 확인 후 이사 전원 찬성하여 오전 11시 4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와 같이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인감날인 하다.


2022. 11. 30.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

장영준 

상임이사

노희원 

이 사

이상준 

이 사

이충호 

이 사

홍인석 

이 사

신진상 

이 사

전광호 

이 사

고윤순 

